

# 『2026 회수시장 지원 세컨더리 펀드』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

『2026 회수시장 지원 세컨더리 펀드』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## 1. 선정 개요

항 목	세부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
위탁운용 금 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위탁운용금액 : 총 1,200억원</li> <li>* 위탁운용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, 위탁운용사 선정 이후 승인 절차 진행함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
분 야 별 출자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출자계획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 <th>분 야</th> <th>산은 출자금액</th> <th>산은 출자비율</th> <th>펀드별 목표결성금액</th> <th>선정 운용사수</th> <th>조성목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중 형</td> <td>900억원</td> <td>30.0%</td> <td>1,500억원</td> <td>2개</td> <td>3,000억원</td> </tr> <tr> <td>소 형</td> <td>300억원</td> <td>30.0%</td> <td>1,000억원</td> <td>1개</td> <td>1,000억원</td> </tr> <tr style="font-weight: bold;"> <td>합 계</td> <td>1,200억원</td> <td>30.0%</td> <td>-</td> <td>3개</td> <td>4,000억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산은 출자금액은 펀드별 목표결성금액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</li> </ul> </li> <li>○ 운용사는 지원분야를 자율 선택할 수 있으나, 중복지원은 허용하지 않음</li> <li>○ 선정된 운용사간 민간출자자 모집의 과도한 경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종 결성은 원칙적으로 펀드별 목표결성금액의 200% 이내로 제한하며, 200% 초과분에 대한 관리보수는 하향조정 등 별도 협의</li> <li>○ 소정의 심사기준에 따른 결과 및 위탁운용금액 조정 등에 따라 조성목표, 출자금액, 출자비율 및 선정 운용사 수 등은 변경될 수 있음</li> </ul>	분 야	산은 출자금액	산은 출자비율	펀드별 목표결성금액	선정 운용사수	조성목표	중 형	900억원	30.0%	1,500억원	2개	3,000억원	소 형	300억원	30.0%	1,000억원	1개	1,000억원	합 계	1,200억원	30.0%	-	3개	4,000억원
분 야	산은 출자금액	산은 출자비율	펀드별 목표결성금액	선정 운용사수	조성목표																				
중 형	900억원	30.0%	1,500억원	2개	3,000억원																				
소 형	300억원	30.0%	1,000억원	1개	1,000억원																				
합 계	1,200억원	30.0%	-	3개	4,000억원																				
운 용 사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홈페이지* 공개모집 공고 등을 통해 산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</li> <li>- 운용사, 운용인력,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</li> <li>* <a href="http://www.kdb.co.kr">www.kdb.co.kr</a>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
접수일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26년 5월 29일(금) 10:00 ~ 15:00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
접수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출서류*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 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 시한 내 제출(접수처 및 문의방법 참고)</li> <li>* 제출서류 및 관련 양식은 공고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</li> <li>○ 접수시한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, 접수 후 산은이 요청하지 않은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허용하지 않음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

## 가. 기본항목

항 목	세부내용
출자대상 투자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」에 의한 벤처투자조합</li> <li>○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</li> <li>○ 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」에 의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</li> <li>○ 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」에 의한 창업·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</li> </ul> <p>※ 선정된 위탁운용사는 관련 법규의 신설·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투자기구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운용 자격을 갖추고 있고 본건 펀드의 운용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출자자간 협의를 통하여 펀드 결성 전까지 변경 가능</p>
심사결과 발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26년 6월말</li> </ul> <p>* 일정은 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선정 이후 내부 승인절차 완료 후 출자확정</p>
펀드 결성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선정일로부터 9개월 이내</li> </ul> <p>* 목표결성금액 미달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협의를 통해 3개월 이내 연장 가능</p>
운용사 신청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안서 접수일 현재 「출자대상 투자기구」의 관련 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하도록 국내에 설립된 법인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안 운용사가 외국법인일 경우, 국내법 적용 등의 제한이 없도록 제안서 접수일 이전까지 국내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함(사전협의 요망)</li> </ul> </li> <li>○ 제안 운용사에서 운용중인 기존 펀드 정관(규약)에 유사한 목적을 가지거나 경합 소지가 있는 펀드 설립을 금지하는 경우 산은과 사전협의 요망</li> <li>○ 제안 운용사가 유한회사이고 동사의 출자자들이 유한회사 형태로 기존 펀드를 운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,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존 펀드 운용사와 제안 운용사의 최대 출자자가 동일하거나 기존 펀드 운용사에 참여한 개인출자자중 2/3 이상이 제안 운용사의 출자자로 참여 하면, 기존펀드 운용실적을 본건 제안 운용사 실적으로 인정하여 평가</li> <li>- 단, 신설되는 유한회사가 제안 운용사로 참여할 경우, 법인 설립은 접수일자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</li> </ul> </li> <li>○ 2개 이상의 운용사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펀드 운용을 위한 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</li> <li>○ 아래와 관련된 경우, 금번 출자사업 지원이 제한되며 자세한 사항은 6. 접수처 및 문의방법 내 산은 담당자 앞 개별문의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본 제안 펀드에 산은 또는 산은이 출자한 모펀드가 LP로 포함되는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

## 나. 주요 출자조건

항 목	세부내용																			
주 목 적 투자대상 및 의무투자 비 율	<p>○ 기존 펀드<sup>①</sup> 및 운용사<sup>②</sup> 보유 국내 중소·벤처기업의 기발행 주식 등*의 인수에 약정총액의 60% 이상 투자</p> <p>* 무담보전환사채,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채 포함, 이하 ‘구주’</p> <p>- 구주 인수와 동시에 투자대상기업이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 및 주식 관련채 등의 인수 시 주목적 투자로 인정 (단, 구주 인수금액 이내)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ott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주1) 벤처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, 창업·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, 개인투자조합 등</p> <p>주2) 상기 펀드를 업무집행조합원(사원)의 지위로 운용 중인 운용사 (단, 개인은 제외)</p> </div>																			
산 은 출자비율	○ 산은 출자비율 [30%] 이내로 제안																			
운 용 사 의 무 출자비율	<p>○ 약정총액의 [2%] 이상*</p> <p>* 공동 운용의 경우 위탁운용사는 각각 의무출자비율 이상 출자</p> <p>* 운용사 계열사의 출자금액은 의무출자비율 산정에서 제외</p> <p>* 소속 운용인력 출자금액은 운용사 출자금액으로 인정</p>																			
출 자 자 요 건	○ 국내 기관투자자, 법인이 원칙이며, 개인출자자(운용사의 운용인력 제외), 타 집합투자기구(사모투자신탁 등), 해외출자자 등은 산은 앞 사전협의 필요																			
존속기간	○ 펀드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 (1년씩 2회 연장 가능)																			
투자기간	○ 펀드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																			
납입방식	○ 수시납(Capital Call) 또는 분할납																			
기준수익률	○ 내부수익률(IRR) 7% 이상 (단, 타 출자자 대비 낮지 아니하여야 함)																			
운용보수	<p>○ 관리보수 : ① 또는 ② 중 선택</p> <p>- 펀드 최종 결성규모에 구간별 관리보수율을 적용하여 합산</p> <p>* 다른 방식의 관리보수 제안시 아래 표를 통해 산출된 관리보수 이내에서 협의 가능</p> <p>① 2년간 약정총액 및 투자잔액 기준, 이후 투자잔액 기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구 분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≤ 1,000억원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≤ 2,000억원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2,000억원 &lt;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투자잔액</td> <td>연1.6% 이내</td> <td>연1.3% 이내</td> <td rowspan="2">연0.5%이내</td> </tr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(약정총액 - 투자잔액)</td> <td>연1.4% 이내</td> <td>연1.1% 이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성립일~2년 : 투자잔액 및 (약정총액 - 투자잔액) 기준, 2년~만기 : 투자잔액 기준</p> <p>② 2년간 약정총액, 이후 투자잔액 기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구 분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≤ 1,000억원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≤ 2,000억원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2,000억원 &lt;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약정총액 및 투자잔액</td> <td>연1.5% 이내</td> <td>연1.2% 이내</td> <td>연0.5%이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성립일~2년 : 약정총액 기준, 2년~만기 : 투자잔액 기준</p>	구 분	≤ 1,000억원	≤ 2,000억원	2,000억원 <	투자잔액	연1.6% 이내	연1.3% 이내	연0.5%이내	(약정총액 - 투자잔액)	연1.4% 이내	연1.1% 이내	구 분	≤ 1,000억원	≤ 2,000억원	2,000억원 <	약정총액 및 투자잔액	연1.5% 이내	연1.2% 이내	연0.5%이내
구 분	≤ 1,000억원	≤ 2,000억원	2,000억원 <																	
투자잔액	연1.6% 이내	연1.3% 이내	연0.5%이내																	
(약정총액 - 투자잔액)	연1.4% 이내	연1.1% 이내																		
구 분	≤ 1,000억원	≤ 2,000억원	2,000억원 <																	
약정총액 및 투자잔액	연1.5% 이내	연1.2% 이내	연0.5%이내																	

항 목	세부내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성과보수 : 기준수익률 초과수익의 20% 이내</li> <li>○ 상기 보수 체계를 기본으로 성과 중심의 관리·성과보수를 연계 구성하여 제안 가능(사전 협의 요망)하며, 펀드별 보수체계는 선정시 개별 협의를 거쳐 확정</li> </ul>
핵심 운용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핵심운용인력 총 3인 이상 참여 (공동 운용의 경우 운용사 당 2인 이상 참여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안펀드 규모 및 운용 전략, 운용인력의 경력, 역량 및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원으로 제안</li> <li>- 핵심운용인력 중 대표펀드매니저 1인 지정 (공동 운용의 경우 운용사 당 대표펀드매니저 1인 지정)</li> <li>- 제안사는 선정 심사 시 평가대상이 되는 핵심운용인력 3인(대표펀드매니저 1인, 핵심운용인력 2인)을 지정하여 제안서 제출 (공동 운용의 경우 운용사 당 2인(대표펀드매니저 1인, 핵심운용인력 1인)을 지정)</li> </ul> </li> <li>○ 자격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핵심운용인력은 일정 기준 이상의 투자경력 요건*을 충족해야 함 * 핵심운용인력 관련 세부 사항은 제안서 엑셀 서식 '작성요령' 참조</li> </ul> </li> <li>○ 핵심운용인력(대표펀드매니저 포함)이 투자기간 중 본건 펀드를 포함하여 핵심운용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펀드의 개수는 4개*를 초과할 수 없음 * 투자기간이 경과하였거나, 약정총액의 60% 이상 투자하고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한 펀드는 미포함</li> <li>○ 펀드 결성 시 핵심운용인력은 정관(규약)에 기재</li> </ul>
수탁회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산은과 협의하여 선정</li> <li>○ 펀드자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</li> </ul>
회 계 감 사 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산은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인 선정</li> </ul>
펀 드 전자보고 시 스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펀드 전자보고 시스템 사용 의무</li> <li>○ 펀드운용 등에 대해 산은이 지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고</li> <li>○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</li> </ul>
공정가치 평 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운용사는 펀드 투자자산에 대하여 산은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공정가치평가 의뢰 및 동 결과를 반영한 '지분법(연결)' 패키지를 산은 앞 제출 (정관(규약) 반영사항)</li> </ul>
해 외 투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내기업 관련 해외투자 및 순수 해외투자에 대하여 제한적 허용 ※ 단, 비주목적 투자로 분류</li> </ul>

항 목	세부내용
	<p>- (국내기업 관련 해외투자) 약정총액의 20%까지 허용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"> <p><b>* 국내기업 관련 해외투자 예시</b></p> <p>가. 국내기업이 설립하였거나 설립 예정인 외국기업</p> <p>나.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외국에 공동으로 설립하였거나 설립 예정인 합작법인</p> <p>다. 회사(펀드)가 국내기업(SI)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외국기업</p> <p>라. 국내기업이 외국 투자자 유치 또는 사업의 외국진출을 위해 해외로 법인을 전환한 경우 해당 외국기업(단, 국내에 사업장과 인력 유지, 한국인이 경영권을 보유)</p> <p>마. 전체 고용인력 대비 한국인 고용률이 50% 이상인 외국기업</p> <p>바. 국내기업과 제품 또는 서비스, 기술 관련 공동 연구·개발과 관련하여, 계약을 체결한 외국기업</p> </div> <p>- (순수 해외투자) 초과 결성액의 30%까지 허용</p>
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본 공고에 의해 운용사가 제안한 출자조건(출자금액, 보수, 인센티브 등)의 적용 여부는 선정 이후 최종 결정 예정</li> <li>○ 운용사는 최종 선정 이후 펀드 결성을 위해 타 출자사업에 참여를 계획할 경우, 해당 출자사업 제안서 제출 이전 산은 앞 사전 보고 의무</li> <li>○ 최다출자자 우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출자자 모집과정에서 최다출자자(병행펀드를 포함)에 한해 관리보수 등 일부 출자조건 우대적용(예: 관리보수 인하) 가능</li> <li>- 주목적 투자분야, 비율 등 펀드 조성 목적을 훼손하는 조정 불가</li> </ul> </li> <li>○ 운용사는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병행펀드(Parallel 펀드) 구조로 제안 가능하며, 이 경우 병행펀드와 본건 제안펀드를 합산하여 산은 출자비율 등 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세부 운용조건은 병행펀드와 동일하거나 유리한 조건이어야 함</li> <li>- 병행펀드의 결성일은 제안펀드 결성일보다 늦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</li> <li>* 다만, 선정 후 결성과정에서 병행펀드 구조를 희망하는 경우, 세부 운용조건, 결성일 등은 공고조건 및 펀드조성 취지 범위 내에서 사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</li> </ul> </li> <li>○ 산은의 내규, 정관(규약)을 우선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산은의 리스크관리 목적상 펀드 투자대상(편입가능 자산 유형) 및 차입 행위 등에 대한 정관(규약)상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음</li> </ul> </li> <li>○ 산은과 시너지 창출 가능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산은 앞 직접투자, 인수금융 및 공동투자 기회제공 등 시너지 창출계획 및 실적을 심사시 반영</li> </ul> </li> </ul>

항 목	세부내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책임투자(ESG, 스투어드십코드 등) 관련 운용사 내규, 구축 및 운영 현황, 도입 계획 등에 대해 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, 심사시 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환경보호(E), 사회적 책임(S), 적정한 지배구조(G) 요소 등을 종합 고려</li> <li>- 단, 책임투자 시행 중인 운용사는 선정된 후 매년 책임투자에 관한 시행 보고서 등을 산은 앞 제출</li> </ul> </li> <li>○ 미합중국의 은행지주회사법(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), 최종 시행규정(Volcker Rule Implementing Regulations) 등을 준수하여야 함</li> <li>○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모투자 일반 관행에 따르며, 결성 과정에서 산은과 개별 협의하여 결정함</li> </ul>

## 2. 선정 우대 항목

- 산은 위탁 운용 펀드 청산 수익률이 우수한 경우
- 금융위원회 지정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

## 3. 선정 배제 및 취소 기준

### □ (선정 배제)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 접수일 기준으로 판단

-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-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
  - 과거 5년 이내에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바 있거나, 시정명령 이행 실적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

※ 다만, 본 펀드 운용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내역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정 배제사유에서 제외 가능함
-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
-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, 2년 이내에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등 펀드 운용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위탁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안 펀드의 핵심운용인력과 운용사 대표이사가 5년 이내에 감독 당국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
-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·형사상 소송의 진행, 리스크관리,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, 경영권 불안정,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산은이 출자한 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등을 한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- 산은으로부터 출자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후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- 공고일 이후 위탁운용사 또는 제3자가 출자자의 선정 절차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'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'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

## □ 선정 취소

- 펀드의 목표결성금액(조정된 경우 조정 후 금액)에 미달하는 경우
- 공고문 또는 산은이 제시하는 출자조건 등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정관(규약) 협의 등 후속 업무 진행이 곤란한 것으로 산은이 판단하는 경우
-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,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
- 위탁운용사가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 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평가대상으로 지정된 핵심운용인력(대표 펀드매니저 포함)이 퇴사,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
-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※ 선정 취소 발생시 차순위 후보자와 우선협의를

## 4. 제재 사항 및 기타

### □ 제재 사항

- 결성시한(협의에 의한 연장기간 포함) 내 펀드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운용사 또는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시한 또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
  - 다만, 관련 법규상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해 펀드결성이 지연될 경우 제재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함
- 선정된 펀드가 존속기간 중 정관(규약)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대해 1년 이하 출자 제한하며, 기지급된 관리보수를 환수하거나 성과보수를 미지급할 수 있음
- 선정된 운용사가 출자확약서 등의 제출에 따라 우대를 받았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5년 이하 출자 제한되고, 실제 출자금액이 당초 제출한 출자확약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할 수 있음
- 출자대상 투자기구 결성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
- 펀드 운용현황에 따라 향후 출자사업에 제안시 감점(가점)되거나, 3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할 수 있음

### □ 기타

-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
  - 특히,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투자실적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누락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,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며 확인일로부터 5년 이하 출자 제한함
- 제안서 작성기준일은 2026년 3월 31일로 하며, 핵심운용인력 등의 참여 인력은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함
-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본 사업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
  - 단, 변경사항 발생시 산은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

## 5. 선정절차 및 일정

### □ 선정 절차

○ 공고 → 제안서 접수 → 서류심사 → 현장실사 → 구술심사 → 최종선정

### □ 선정 일정

일 자	내 용	비 고
2026. 5. 29(금)	제안서 접수	10:00 ~ 15:00
2026. 6월말	최종 선정	개별 통지 또는 홈페이지 게시
2026. 7월말	출자확약서 발급	산업은행 내부 승인절차 완료 후

\*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 6. 접수처 및 문의방법

### □ 접수처

○ 산은이 정하는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 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(한국산업은행 본점 1층 고객접견실)에 접수시한 내 제출

\* 제출서류 및 관련 양식은 공고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

○ 구술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운용사는 별도 PT자료(12부)를 제출

- 분량 : 본문 기준 20페이지 이내 (발표 당일 PT자료, 파일 별도 지참)

### □ 문의방법

○ 추후 FAQ를 산은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이며,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아래 이메일을 통해 협의

\* 문의사항 집계, FAQ 작성 등을 위해 유선 문의 최소화

구 분	내 용
주 관 기 관	한국산업은행 (간접투융자금융실)
주 소	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4
전 화 번 호	02-787-0674, 0679, 0681
E - M a i l	kdbindirect@kdb.co.kr

2026년 4월 30일

한 국 산 업 은 행